2020년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0. 7. 31.(금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위정현(분과위원장 대행), 박재화, 홍지만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분과위원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840건(안건번호 제2020-83956 호~8589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83956호~83958호는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TV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83956호, 83958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3957호는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83959호~8397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83959호~83960호, 83963호~83964호, 83967호~83970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83961호, 83962호, 83965호, 83966호는 현재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82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55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의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5쪽의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6쪽의 저작물명, 방송사명, 출판사명, 7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민원인 신고 내용, 8쪽의 게시물 제목, 밴드명, 9쪽의 밴드명, 10쪽의 밴드명, 밴드 이용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전차 회의록의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비식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C 위원: 동의함.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

을 확인하였고, 저작물명,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방송사명, 출판사명, 민원인 신고 내용, 게시물 제목, 밴드명, 밴드 이용자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주요 권리자는 '이십세기폭스', '워너브라더스', '영국 BBC one',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소니픽쳐스', '(주)리틀빅픽쳐스', 'tvN', '일본 후지TV', 'CJ 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주)싸이더스', 'CGV 아트하우스',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위원, C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 시한 3,84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안건번호는 제

2020-83956호~8589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3956 호~8395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TV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다만 순번 2번인 안건번호 제2020-83957호는 심의일 현재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부결 의견으로 수정하여 구두로 검토보고 드리겠음.

(안건번호 제2020-83957호 URL에 접속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접속하면 "채널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제공이 중지된 동영상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를 확인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20-83956호 URL에 접속하면서)순번 1번은 네이버 TV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해당 일본 애니메이션 모두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제3조, 내국민대우 및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각 영상물분량 및 기타 특이사항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 -83956호~8395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83958호의 블로그는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이외에도 '△△△ △△ △△' △△부터 △△△△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수의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이 게시되어 있는데 902화를 제공하고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 △△' △△△△를 제공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심의을 요청하였음.
- A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에는 유료광고가 삽입되어 있고 블로그 이 웃 수와 방문자 수가 상당히 많음. 7월 27일 기준 방문자 수가 5,092 명, 7월 28일 5,155명, 7월 29일 5,125명, 7월 30일 5,044명이었음. 게 다가 심의일 현재 시각인 10시 37분 기준 방문자 수가 벌써 1,755명에 달함. 블로그의 오직 한 건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심의 요청이 들어왔지만 분과위원회가 인지한 이상 심의대상 블로그에 대한 포괄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

△△ △ △△ △△ △△ △△ △△"라는 내용으로 해당 블로그 전체를 신고하였음. 민원인의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네이버 블로그를 조 사하여 하나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오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결된다면 보호원 이 심의대상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모니터링해서 심의 요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함.

- A 위원: 인지된 사항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의 식이 있음. 심의대상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 링을 할 필요가 있음.
- C 위원: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안건번호 제 2020-83957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나머지 안건은 심 의대상 게시물이 영상 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 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83956호, 83958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가 결 의견이고, 안건번호 제2020-83957호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3956호, 839 5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고, 안건번호 제2020-83957호는 부결함.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다만 안건번호 제2020-83961호, 83962호, 83965호, 83966호는 현재 전송이 중단되어 더 이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아 부결 의견으로 수정하여 구두로 검토보고 드리겠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83959호~8397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현재 전송 중단된 안건번호 제

2020-83961호, 83962호, 83965호, 83966호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현재 전송 중단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부결 의견이며,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같은 생각임.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3959호~ 83960호, 83963호~83964호, 83967호~8397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번호 제2020-83961호, 83962호, 83965호, 83966호는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3971호~8589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큰 화면으로 몇 가지 안건을 같이 살펴보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4124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결백'을 mp4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이영화는 2020. 6. 10. 개봉하였고, 7. 9.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7. 28.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네이버 밴드 '△△ △

명임. 이 영화는 2020년 3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이 연기되었다고 함.

(영화 '침입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4133 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침입자'를 mp4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4. 개봉하였고, 6. 2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6. 22. 기준으로 국내 박스오피스 4위를 기록하였음. 심의대상 밴드명은 '△△△△△△△△△△△△·이고, 이 밴드 멤버 수는 39명임.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 건번호 제2020-84263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을 270 캐시에 판매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7. 8. 개봉하였고, 7. 28.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화인 '시,나리오' 등을 공유하고 있음.

(영화 '인베이젼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84287호는 위와 같은 밴드에서 영화 '인베이젼 2020'을 mp4 파일로 공유한 사안임. 이 영화는 러시아 SF 스릴러 영화로, 2017 개봉작인 '어트랙션'의 후속작이라고 함. 2020. 7. 1. 개봉하였고, 7. 14.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7. 28.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 어 안건번호 제2020-83971호~8589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C 위원,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83971호~85897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3971호~8589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3957호, 83961호, 83962호, 83965호, 839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그 밖에 안건번호 제2020-83956호, 83958호~83960호, 83963호~83964호, 83967호~8589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위정현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7,

분과위원장 대행 위정현

위원 박재화

위원 홍지만